

제정 2013. 09. 30. 속초시고시 제2013-39호
개정 2016. 03. 30. 속초시고시 제2016-12호
개정 2016. 06. 23. 속초시고시 제2016-33호

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

속초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 ~ 제36의 규정에 “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6년 6월 23일

속 초 시 장

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자(선원포함) 및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영업시간)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(이하 "낚시어선" 이라 한다)의 영업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선외기를 설치한 낚시어선은 하절기(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)는 07:00부터 18:00까지로 하며, 동절기(11월 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)는 09:00부터 16:00까지로 한다.

제4조(영업구역)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해안선으로부터 연안 7마일까지로 한다. 단, 선외기를 설치한 낚시어선은 연안 3마일까지로 한다.

제5조(안전운항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갯바위 및 간출암, 무인도서 등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장소에 낚시승객을 하선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.
2.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어선의 입·출항 및 승선 중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용 거부 시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.

3. 승객의 위급한 상황 및 해상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, 인명구조 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4.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미만의 사람,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5.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출항 전 항해·통신·기관·구명장비·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6. 낚시어선업자는 기상악화(주의보 발효 시 부터)시 출항을 금지하여야 한다.
7. 낚시어선업자·선원은 승선하려는 낚시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·유지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<신설>
8. 항해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.<신설>

②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2.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지시 및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.
3. 선장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한다.
4. 수산물의 불법 포획·채취 행위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방류한 치어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한다.
5. 해상에 유류, 분뇨,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한다.
6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한다.<신설>
7. 승선자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<신설>

제6조(기타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이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승객의 준수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킨 후 출항하여야 한다.

1. 낚시승객은 낚시어선의 운항에 있어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장의 지시 및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.
2. 낚시승객은 낚시장소에서 낚시 중 기상악화 예견 등으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장의 안전대피를 위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3.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'승선자명부' 작성 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,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에게 정확한 작성을 요구하고 허위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<신설>
-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·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·군수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한 제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